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특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허용〉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3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달회의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2.
3. 회부연월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사용을 허용하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u>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 ----- ----- ----- ----- <u>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u> ----- ----- ----- ----- -----.
제18조(<u>자원봉사단체</u> 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자원봉사단체</u> 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u>자원봉사단체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u> 에 대한 지원) -- <u>자원봉사단체 및 한국자원봉사협의회</u> -- ----- ----- -----.

현행법령은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국제행사, 재난복구 및 구호,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하여 전국 120개 자원봉사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¹⁾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 ②협의회의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③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그런데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국내외 자원봉사자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자원봉사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진흥에 공익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특례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주요 사업]

-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정부포상) 등 자원봉사자 인정·예우 및 홍보
 -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학술행사·세미나 개최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확대
 -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개발) K-Volunteering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자원봉사 확산·홍보
 -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해 인적 역량 강화
- ※ 자원봉사관리사(민간등록자격증) 자격 과정 운영 등

※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여·사용과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의 대상을 ‘한국자원봉사협의회’까지 확대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자원봉사 진흥 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정한다.

⑥협의회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25년 기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개발, 자원봉사 교육 등 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1억 2,700만원이 교부된 바 있고,

올해에는 UN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서 K-자원봉사단 운영에 5억 원이 추가 편성되어 총 6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 예정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비고
	교부액	집행액	교부액	
계	127,000	127,000	627,000	
전국자원봉사자대회	63,000	63,000	63,000	
전국자원봉사 컨퍼런스	35,000	35,000	35,000	
국제협력 및 국제교류 개발	15,000	15,000	15,000	
자원봉사 교육	14,000	14,000	14,000	
K-자원봉사단 운영 ²⁾	-	-	500,000	

※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특례 요건으로 공익에의 부합, 특례 부여의 보충성, 명확성·구체성 등 삼고 있으므로,³⁾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K-자원봉사 프로젝트 전략 TF에 따르면 대국민 홍보 진행 및 캠페인 세계대회 참여, 이슈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젝트 발굴·운영, 디지털 기반 신규 프로젝트 공모, K-자원봉사(단) 운영, 풀뿌리단체 프로젝트 발굴 및 성장지원 등을 기획중임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하여 국유재산 특례를 부과하려는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 협의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운영되는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특례 신설이 보다 적절한 경제적 지원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하여만 국유재산 특례 등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 자원봉사협의회 등 다른 자원봉사협의회 및 각종 자원봉사연합회⁴⁾ 등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인 민·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국 단위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에 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이 적절한 측면이 있고,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여·사용은 자원봉사를 실행하는 자원봉사단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에 예외적으로 허

4) 현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외에 서울시자원봉사협의회 등 지역별 자원봉사협의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한국자원봉사연합회,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자원봉사단체가 설립한 다양한 형태의 협의회 및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음.

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정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0